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对人, 对就则有! 人生是 考则如好让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5. 29.(일)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송유나(044-202-7064)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044-202-707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늘(5.29.)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 전체 법률 목록 및 소관 부서는 [붙임1] 참고
 - o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23년 7월 1일)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044-202-8831)

-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유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다.
- o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것

-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 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 또한,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하여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 * (전속성 없는 종사자: 40만명) 하나의 주된 사업이 없이 불특정 다수 사업에 노무제공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명)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나, 보조 사업에도 노무제공
 -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 ☞ 공무원노사관계과 소관(044-202-7656, 7981)
 - 그간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10.7.1.)를 적용하지 않아 왔으나,
 - *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여야 합의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 * 노동조합법은 '근로시간' 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공무원 및 교원의 경우「국가 공무원법」,「사립학교법」등에서 "근로시간" 대신 "근무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

-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 ·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시・도지사・시군구청장・교육감
- 근무시간 면제한도(면제시간, 사용인원)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 위원회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교섭구조 ·범위 등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다.
 - * (공무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행정부, 각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원) 초중등 교원은 각 시도, 대학은 각 대학교
- 또한, 국민들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 * 구체적인 공개 내용,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노사관계법제과 소관(044-202-739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이번 개정은 그간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노사정 합의('20.10.16.)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여성고용정책과 소관(044-202-7477)

- 보다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 그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044-202-7529)

-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인노무사** 자격심의 · 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뢰** 등(형법 제127조, 제129~132조)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 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044-202-7156)

-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산업안전보건법」제167조제1항)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현행 고용허가 제한 사유)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
- □ 그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되었다.
 - * (근로복지기본법)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 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독촉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근거 마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 등
 - (고령자고용법) 고령자인재은행 등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교육원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 추가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법) 고용보험심사委 및 산업재해보험 재심사委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화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송유나 (044-202-7064)
<총괄>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073)
<공동>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태웅 (044-202-8830)
		담당자	사무관	김영수 (044-202-8831)
<공동>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엄대섭 (044-202-7347)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이영기 (044-202-7352) 천춘희 (044-202-7359)
~공 长>	공공노사정책관 공무원노사관계과	책임자	과 장	김동욱 (044-202-7647)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류한석 (044-202-7981) 정석훈 (044-202-7656)
<공동>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7611)
		담당자	사무관	박수호 (044-202-7935)
<공동>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담당자	서기관	윤종호 (044-202-7477)
<공동>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영민 (044-202-7526)
		담당자	사무관	김승권 (044-202-7529)
<공동>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문실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이현주 (044-202-7156)
<공동>	근로기준정책관 디지털노동대응TF	책임자	과 장	박상윤 (044-202-7070)
		담당자	사무관	박행남 (044-202-7559)
<공동>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부희 (044-202-7454)
		담당자	서기관	박보현 (044-202-7418)
<공동>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책임자	과 장	곽희경 (044-202-7286)
		담당자	사무관	강석원 (044-202-7288)
<공동>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태훈 (044-202-7587)
		담당자	사무관	김영수 (044-202-7602)





붙임 1 5.29. 국회 본회의 통과 13개 법률 목록

연번	법 률 명	소관 부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정책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3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ㅁ이ㄴ사라게자	
4	교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사관계과 법률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법제과	
6	고용보험법	여성고용정책과	
7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정책과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력담당관	
9	근로복지기본법	디지털노동대응TF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1	국가기술자격법	직업능력평가과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노사협력정책과	
1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산재보상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붙임 2 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법안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 (적용범위) ` 現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
 - * ①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와 ②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
 - ㅇ 적용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
 - * 업무상 재해 위험, 노무제공 형태 등
- □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現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폐지하되. 보험료징수법에 "휴업등 신고 제도" 도입하여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 미부과 근거 마련
 - * (現) '21.7.1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제외 → (改) 실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방식 도입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캐디 등)은 "휴업등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미발생 기간 동안 보험료 미부과

보험료 부과·징수 2 |

- □ (산정)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 × 보험료율
 - ㅇ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ㅇ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및예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 직종 단위에서 요율을 조정하고 재해실적에 따른 할인 할증 미적용
- □ (부담) 종사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 또는 경감) 근거 마련
- □ (장수) 사업주가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이 그 다음달에 보험료 부과
 - * 사업주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설

3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

- □ (플랫폼 운영자 의무) 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 부여
 - ① (신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하도록 함
 - *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② (공제·납부)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납부
 - ③ (자료제공 협조)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
 - ◆ (전용계좌 개설)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료 관리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및 운영토록 함
- □ (플랫폼 운영자 지원)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4 급여 및 보상제도

- □ (급여산정)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보수" 개념 신설
 - ㅇ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 기준으로 산정
 -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 이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
- □ (업무상 재해) 원칙적으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노무 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 위임
- □ (휴업급여)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휴업급여 최저기준 별도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 (법 시행 전 보조사업장 재해 보호)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토록 부칙에 명시